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노동절(5월1일) 및 어버이날(5월8일) 공휴일 지정〉
■ 정청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03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청래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2..
3. 회부연월일 : 2024.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임.

특히 5월 1일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해야 할 어버이날 역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효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동절 및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해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제7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노동절(5월 1일)’ 및 ‘어버이날(5월 8일)’을 공휴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u><신설></u> <u>5.</u> (생략) <u><신설></u> <u>6.</u> ~ <u>10.</u> (생략)	제2조(공휴일) ----- --. 1. ~ 4. (현행과 같음) <u>5. 노동절(5월 1일)</u>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u>7. 어버이날(5월 8일)</u> <u>8.</u> ~ <u>12.</u> (현행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2. 검토의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나,¹⁾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근로자와 공공 부문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근로자 등 민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이나 공무원에 있어서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에 해당하지 않음.

개정안은 ‘노동절(근로자의 날, 5월 1일)’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휴무일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공무원도 공공 부문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²⁾ 근로자의 날에 민간 기관 등이 휴무함에 따라 공공 부문의 업무 여건에 일정한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봄.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2) 대법원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공무원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다만, 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³⁾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관공서가 휴무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노인복지법」 제6조⁴⁾는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양양하기 위한 날로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⁵⁾에 따른 기념일로서 정부 주관으로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 보호와 관련된 행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개정안은 어버이날이 기리는 대상인 노인 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한편,⁶⁾ 도시화·핵가족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효 사상의

3) 2020헌마1025(2022. 8. 31.) 판결요지

가.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도 휴일로 인정되므로, 공무원에게 부여된 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반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선례의 입장은 그대로 타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②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양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5)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각종 기념일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21	어버이날	5. 8.	보건복지부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 보호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를 때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010년 10.8%에서 2022년 17.5%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20.6%로 증가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의의를 되새기고 양양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어버이날을 현행법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되므로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점,⁷⁾ 관공서가 휴무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 등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휴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근로자의 날, 5월 1일)’을 공무원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국가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해당 공휴일의 의미와 상징성,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및 국민 여론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고,

어버이날을 공휴일에 추가 지정하는 것은 해당 일의 의미를 국민적 차원에서 기릴 수 있다는 측면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 여론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

7)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울러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수(15일)가 주요 선진국 대비 적지 않은 수준이고⁸⁾ 최근 대체공휴일('21년 4일, '23년 2일)을 확대해 온 상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고용노동부는 어버이날의 공휴일 추가 지정과 관련하여 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의 휴식권 강화 및 내수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나, 전체 공휴일 현황 및 해당 공휴일의 의미와 최근 대체공휴일 확대로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2

8) 주요 선진국 공휴일 수 : 영국(8일), 독일(10일), 미국·프랑스(11일), 호주(12일)